

연천군 포상조례 [1972. 3. 23] 조례 제470호

일부개정 1982. 4. 30 조례 제 780호
일부개정 1984. 2. 11 조례 제 907호
일부개정 1986. 1. 11 조례 제1047호
일부개정 1989. 7. 14 조례 제2060호
일부개정 1998. 9. 23 조례 제2421호
(연천군 행정조직조례)
일부개정 2001. 8. 1 조례 제2573호
(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)
일부개정 2001. 10. 24 조례 제2591호
(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)
일부개정 2005. 3. 16 조례 제2700호
(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)
일부개정 2005. 10. 4 조례 제2724호
일부개정 2012. 11. 5 조례 제3062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일부개정 2013. 1. 10 조례 제3072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일부개정 2013. 1. 10 조례 제3073호
일부개정 2018. 4. 6 조례 제3460호
일부개정 2019. 3. 4 조례 제3568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23. 7. 13 조례 제3873호
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
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연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소속직원, 연천군민(외국인을 포함하며, 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,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05. 10. 4, 개정 2013. 1. 10, 2018. 4. 6>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(패),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

행한다. <개정 2005. 10. 4, 2013. 1. 10>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05. 10. 4, 2013. 1. 10>

1.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2.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
3.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
4.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
5.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·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

제6조(감사장·패) 감사장(패)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내·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·단체에 수여한다.

[전문개정 2013. 1. 10]
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 2005. 10. 4, 2013. 1. 10>

1. 각종 품평회, 경진회,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
2. 학술, 예술,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3.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
4.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·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

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8. 4. 6>

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, 상패,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4, 2018. 4. 6>

③ 포상 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견학 및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행할 수 있다. <신설 2005. 10. 4, 개정 2018. 4. 6>

제9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기관, 단체장과 군의 실장·담당관, 과·원·소장 및 읍·면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4, 2023. 7. 13>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에 따른 포상은 예외로 한다.

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8. 4. 6]

제9조의2(포상통제)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. <개정 '98. 9. 23, 2001. 10. 24, 2005. 3. 16, 2012. 11. 5, 2013. 1. 10, 2018. 4. 6, 2019. 3. 4>

제10조(포상기준)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4, 2018. 4. 6]

제11조(이중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12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4. 6>

제13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2. 4. 30 조례 제78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4. 2. 11 조례 제90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6. 1. 11 조례 제104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7. 14 조례 제2060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.

부칙 <1998. 9. 23 조례 제242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**제4조** 생략

부칙 <2001. 8. 10 조례 제25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0. 24 조례 제25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3. 16 조례 제270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4 조례 제27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1. 5 조례 제3062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연천군 포상조례」 제9조의2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㉘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. 10 조례 제3072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연천군 포상조례」 제9조의2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. 10 조례 제30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6 조례 제346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연천군인사위원회”를 “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 <2019. 3. 4 조례 제3568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실·과·단·원·소장”을 “담당관, 과·원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 중 “안전행정과장”을 “행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⑫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7. 13 조례 제3873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
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천군 포상조례

[별표 1] 삭제 <2018. 4. 6>

[별표 2] 삭제 <2018. 4. 6>

[별표 3] 삭제 <2018. 4. 6>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18. 4. 6>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18. 4. 6>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18. 4. 6>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18. 4. 6>

[별지 제5호서식] 삭제 <2018. 4. 6>